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 가.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및 대통령 령 제20464호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양성 및 학교교육의 재정적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
 나.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설정, 올바른 교육지원 재정으로 운용코자 함.

3. 주요내용
 가.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보조금 일체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
 나.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
 다. 보조사업의 범위
 라. 보조사업 기준액의 범위

4. 관련법령
 가.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
 나.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 ○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07.12.28 대통령 령 제20464호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인재양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현 도내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기 제정추진 중인 사항입니다.

○ 조례제정의 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에 “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.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자치단체의 시군 사무 중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에 “공사립의 초등학교, 중학교, 기술학교, 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,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휘·감독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조례제정 구성은 목적, 보조사업의 범위, 보조기준액의 범위, 보조금의 신청, 보조금의 교부결정, 위원회의 설치, 위원장 등의 의무, 위원회의 기능, 목적 외 사용금지,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한 준용규정, 시행규칙 등 입법취지, 추진방안관리규정 등이 포함되므로 입법가능성, 합목적성, 절차적 규정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.

○ 다만 조례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안 제3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안 제6조 제4항 제4호 “학교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” 등 그 내용이 다소 광의적 개념을 포함하므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향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※ 참고로 현 도내 14개 시군중 보조 기준액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 곳은 10개 시군이며, 예산의 범위내 로 규정한 곳이 4개 군입니다.

감사합니다.

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 가. 「성주군 교육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「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전부 개정하여,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내 인재 발굴 육성
 나. 장학생의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고등학생 이하 성적우수자, 전국단위 대회에서 체육, 예능부분 입상자 및 성주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코자 함.

3. 주요내용
 가. 장학기금의 일정금액 조성으로 장학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
 나.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 장학금 지급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의 객관성과 다양성 확보
 다.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
 라. 장학금 지급방법 등 세부적 사항의 규칙근거

4. 관련법령
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 나.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 ○ 「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「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 조례명칭 등 전부 개정의 주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정부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제정 권고안에 따라 「성주군교육경비 보조금지원조례」를 제정하고

○ ‘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’는 인식아래 인재 발굴 및 인재 양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확대하고자 새로운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확정하고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직무를 설정하며,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, 주 사업인 장학생 기준과 선발방법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「성주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전부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.

○ 기금조성에 관하여 안 제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추정되는바 기존의 성주군교육발전 기금의 출연여부와 그 정도 그리고 새 기금의 조성기한 10년에 대한 조성규모와 운용방안은 조례개정과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의회의결을 필요로 하고

○ 다만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이 개정 조례의 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 제2조(경과규정)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기금의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, 같은 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“지방자치 단체의장은 기금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고 규정하므로 이 조례의 전부 개정과 별도로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의 결산 및 목적변경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추후 집행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.

감사합니다.